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및 입안예고)

2008. 10. 8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8-196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입안예고안

1. 개정이유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등의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대한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포장 제품의 크기에 따라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에 대해 주표시면에 OEM 제품임을 표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의 선택권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중 포장 제품의 내포장 제품 표시기준 강화(안 제5조제1호)

- (1) 최근 학교 앞 등에서 유통기한 등의 표시없이 과자류, 초콜릿류 등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표시의무가 없는 내포장 제품을 임의

대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 발생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포장 제품의 크기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등 필요한 표시사항을 의무화 할 필요

(2) 제품의 표시는 최소 판매단위별로 표시하되, 그 내용물이 개별 포장된 경우에는 그 개별포장의 포장면적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영양성분 등 필요한 표시사항을 차등화 함

(3) 내포장 제품에도 필요한 표시사항을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기대

나.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의 표시기준 등 강화(안 제5조제3호 및 제5조제6호)

(1) 소비자에게 OEM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OEM 제품이라는 표시와 제조원 등에 대한 활자크기 등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할 필요

(2) OEM 제품의 표시는 한글로 상표명의 1/2 이상 또는 12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업소명 및 소재지를 활자크기를 8 포인트(현행 6포인트) 이상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함

(3) OEM 및 제조원 표시를 크게하거나 알아보기 쉽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기대

다. 영양소강조 등 주표시면의 표시사항 일괄표시(안 제5조제7호)

- (1) 영양소표시, 무보존료 등의 강조표시를 주표시면에 무분별하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킴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주표시면에 일괄표시 하도록 보완할 필요
- (2)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OEM, 영양소 강조 등의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주표시면에 일괄표시를 의무화함
- (3) 주표시면에 영양소 강조 등의 표시를 일괄표시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로 선택권 보장에 기여

라.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한 제품에 사진 등 이미지 사용금지[안 제7조 제3호, 별지 1 제1호가목1)다)(3)]

- (1)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한 제품에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원료의 사진 및 그림 등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해당 원료가 실제로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
- (2)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을 내는 경우 그 향을 뜻하는 원재료의 그림, 사진 등을 사용 금지 및 합성착향료 사용여부를 제품명 옆이나 아래에 표시 의무화

- (3)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맛을 내는 제품에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 기대

마.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 사용시 표시기준 보완[안 별지 1 제1호가목 1)다)(1)]

- (1)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함량 표시를 제품 뒤면의 원재료명란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재료함량 표시를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
- (2) 특정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주표시면의 제품명 옆 또는 아래에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 (3) 제품명으로 사용한 원재료함량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함으로써 정확한 정보제공에 기대

바. 개별 포장되지 않은 2회 제공량 이상 제품의 영양표시 개선[안 별지1 제1호가목 9)라)(1)(라)④]

- (1) 개별 포장되지 않는 2회 제공량 이상 제품에는 1회 제공량의 영양표시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표시를 함께 제공하는 등 영양표시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및 선택권 보장할 필요
- (2) 개별 포장되지 않은 2회 제공량 이상으로 포장된 제품에 대해

서는 그 제품의 1회 제공량과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함께 표시를 의무화함

- (3) 대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에 대하여 1회 제공량과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할 것으로 기대

사. 멜라민수지 기구·용기 등에 주의사항 표시(안 제6조제3호 다목)

- (1) 멜라민수지 등의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전자렌지에 사용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동 제품에 대한 주의표시 정보를 제공할 필요
- (2)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 가열·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
- (3) 멜라민수지 식기류 등에 대한 사용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건강보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정책팀[☎02-380-1726~7, FAX 02-388-6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 호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66호, 2008. 10. 8.)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는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의2.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 중 내용물을 개별포장한 경우에는 그 개별포장된 제품의 크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포장면적이 150cm² 이상 제품 :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

나. 주표시면이 30cm² 이상 포장면적이 150cm² 미만제품 :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의 표시사항

다. 주표시면이 30cm² 미만 제품 :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의 표시사항

제5조제3호가목1)나) 중 “내용량”을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으로 하고, 같은 목 3)가)의 활자크기란 중 “6 이상”을 “8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주표시면에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12 포인트 이상 활자크기의 한글로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 또는 “OEM 제품”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예시) “OO산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 또는 “OO산 OEM 제품”

7. 영양소강조 등을 주표시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일괄표시 하여야 한다.

(예시)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주문자부착상표(OEM)

무합성보존료

저지방

식이섬유함유

필수지방산 함유 등

제6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 가열·조리시 전자레인지 사용을 하지 않도록 표시

제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

별지 1 제1호가목1)다)(1) 중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을 “주표시면의 제품명 옆이나 아래”로 하고, 같은 목 1)다)(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한 원재료나 성분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 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의 옆이나 아래에 “합성○○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시) 딸기향 캔디
(합성딸기향 첨가)

별지 1 제1호가목 중 4)다)(2)를 삭제하고, 같은 목 중 4)다)(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중 7)나)(3) “표시하거나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를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4) 유산균 음료(살균음료를 포함한다) : 제조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연월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제1호가목9)다)(4) 본문 중 “컵, 개 또는 조각 등”을 “컵, 큰술, 작은술, 개 또는 조각 등” 하고, 같은 목 중 9)라)(1)(라) “영양성분 표시는”을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눈에 띄게 흰색 계열바탕에 검정색계열 등의 글자로”로 하며, 같은 목 중 9)라)(1)(라)

④ “개별 포장된 2개 이상이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제품은”을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개별포장·판매되는 제품은”로, “표시를 할 수 있다”를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하고, 같은 목 중 9)라)(1)라)⑤ “2회 제공량 이상 또는”을 “개별 포장되지 않은 2회 제공량 이상의 제품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함께 할 수 있다.”를 “영양성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중 9)라)(1)라)⑥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단위 중 컵, 큰 술, 작은 술에 대하여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단위기준	표시방법(용량)
컵	200 ml	$\frac{1}{4}$ (50 ml), $\frac{1}{3}$ (67 ml), $\frac{1}{2}$ (100 ml), 1(200 ml)
큰 술	15 ml	1 (15 ml), $1\frac{1}{3}$ (20 ml), $1\frac{1}{2}$ (22.5 ml), $1\frac{2}{3}$ (25 ml), 2(30 ml), 3(45 ml)
작은 술	5 ml	$\frac{1}{4}$ (2 ml), $\frac{1}{2}$ (2.5 ml), $\frac{3}{4}$ (3.75 ml), 1(5 ml), 2(10 ml)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동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등과 동일한 식품등은 2010년 7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

정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하였던 식품등에는 수입을 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표시방법) 식품등(수입되는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p> <p>1.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내포장된 건과류 및 캔디류, 초콜릿류, 껌 및 잼류는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5조(표시방법) ----- ----- -----.</p> <p>1.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는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1의2.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 중 내용물을 개별포장한 경우에는 그 개별포장된 제품의 크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가. 포장면적이 150cm² 이상인 제품 :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p> <p>나. 주표시면이 30cm² 이상 포장면적이 150cm² 미만제품 :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또는 품</p>

	나) 제조연월일	10 이상
	다)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10 이상
	라) 원재료명 및 함량	7 이상
	마) 성분명 및 함량	7 이상
3) 기타 표시면	가) 업소명 및 소재지	6 이상
	나) 영양성분	8 이상
	다) 주의사항 표시	8 이상
	라) 기타사항 표시	6 이상

나·다 (생략)

4·5 (생략)

<신설>

<신설>

	나) 제조연월일	10 이상
	다)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10 이상
	라) 원재료명 및 함량	7 이상
	마) 성분명 및 함량	7 이상
3) 기타 표시면	가) 업소명 및 소재지	8 이상
	나) 영양성분	8 이상
	다) 주의사항 표시	8 이상
	라) 기타사항 표시	6 이상

나·다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6.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

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주표시면에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12 포인트 이상 활
자크기의 한글로 “주문자상표부
착(OEM) 제품” 또는 “OEM 제
품”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
시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예시) “OO산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 또는 “OO산 OEM 제품”

7. 영양소강조 등을 주표시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
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일괄
표시 하여야 한다.

(예시)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주문자부착상표(OEM)

무합성보존료

저지방

제6조(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대상이 되는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표시를 하여야 한다.

- 1. 2 (생 략)
 -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가·나 (생 략)
- <신 설>

제7조(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대상이 되는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용기·포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소비자 오인·혼동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2 (생 략)

식이섬유 함유

필수지방산 함유 등

제6조(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

-----.

- 1. 2 (현행과 같음)
-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가열·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표시

제7조(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

-----.

- 1. 2 (현행과 같음)

3. <신 설>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 제품명

가)·나) (생 략)

다)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칭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

3.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 제품명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1) -----

---주표시면의 제품명 옆이나 아래-----

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생략)

(3)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한 원재료나 성분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맛” 또는 “향” 자를 제품명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과 함께 표시하거나 “OO향 첨가” 또는 “OO향 함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생략)

라)·마) (생략)

4) 제조연월일

가)·나) (생략)

다) 표시대상 식품별 세부표시기준

(1) (생략)

(2) 통조림제품 : 제조연도는 끝 숫자만을 표시하고, 월 단위 중 10월, 11월, 12월의 표시

-----.

(2) (현행과 같음)

(3)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한 원재료나 성분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 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 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의 옆이나 아래에 “합성OO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시) 딸기향캔디
(합성딸기향 첨가)

(4) (현행과 같음)

라)·마) (현행과 같음)

4) 제조연월일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표시대상 식품별 세부표시기준

(1) (현행과 같음)

<삭제>

는 각각 O, N, D로 할 수 있으며, 일 단위 중 1일부터 9일까지의 표시는 바로 앞의 0을 넣어 표시할 수 있다.

(3) (생 략)

(4) 우유·발효유 또는 유산균 음료(살균음료를 포함한다) : 제조 “일”만을 표시할 수 있다.

(5) ~ (7) (생 략)

6) (생 략)

7) 원재료명 및 함량

가) (생 략)

나)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혼합제제류의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등을 모두 표시하거나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식품첨가물의 명칭표시 등은 (2)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예시 : 면류첨가알칼리제(탄산나트륨, 탄산칼슘)]

(3) (현행과 같음)

(4) 유산균 음료(살균음료를 포함한다) : 제조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연월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 (7)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원재료명 및 함량

가) (현행과 같음)

나) -----
-----.

(1)·(2) (현행과 같음)

(3) -----

-----**표시하여야 한다.**

9) 영양성분등

가)·나) (생략)

다) 표시단위 및 1회 제공량 산출기준

(1) ~ (3) (생략)

(4)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식빵, 피자, 과자 등의 제품은 해당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이상 2배(200%)미만의 범위(이하 "1회 제공량 범위"라 한다)의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이하 "단위"라 한다)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그 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가)·(나) (생략)

(5)·(6) (생략)

라) 표시방법

(1) 공통사항

(가) ~ (다) (생략)

(라) 영양성분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도2] 표시서

9) 영양성분등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표시단위 및 1회 제공량 산출기준

(1) ~ (3) (생략)

(4) -----

---컵, 큰 술, 작은 술, 개 또는 조각 등 -----

-----.

(가)·(나)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라) 표시방법

(1) 공통사항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
가 알아 보기 쉽도록 눈

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단위 기준	표시방법(용량)
컵	200 ml	$\frac{1}{4}$ (50 ml), $\frac{1}{3}$ (67 ml), $\frac{1}{2}$ (100 ml), 1(200 ml)
큰 술	15 ml	1 (15 ml), $1\frac{1}{3}$ (20 ml), $1\frac{1}{2}$ (22.5 ml), $1\frac{2}{3}$ (25 ml), 2(30 ml), 3(45 ml)
작은 술	5 ml	$\frac{1}{4}$ (2 ml), $\frac{1}{2}$ (2.5 ml), $\frac{3}{4}$ (3.75 ml), 1(5 ml), 2(10 ml)